고 성 군

공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388호 2018. 4. 12.(목)

조 고성군 조례 제2391호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고성군 조례 제2392호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4 고성군 조례 제2393호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8 고성군 조례 제2394호 고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11 고성군 조례 제2395호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워에 관한 조례18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18-49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21 고성군 고시 제2018-50호 고성군관리계획(남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4 공 고 고성군 공고 제2018-421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 예고 …… 29 고성군 공고 제2018-472호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9 고성군 공고 제2018-477호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54

회					
람					

발행 : 고성군, 편집 : 행정과(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성군수 권한대행 이 향 래 인 부 군 수

2018년 4월 12일

고성군 조례 제2391호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특별회원운영) ① 공룡나라 쇼핑몰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희망자는 사람에 한하여 특별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특별회원에 대하여 상품구매 시 일정금액의 할인이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특별회원 가입비는 별도로 적립·관리하고 이자는 제9조제3항에 의거 사용한다.
- ④ 특별회원의 명칭 및 가입비는 고성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특별회원운영) ① 공룡나라 쇼 핑몰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희망자는 사 람에 한하여 특별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회원에 대하여 상품구매 시 일 정금액의 할인이나 적립금을 추가로 지 원할 수 있다. ③ 특별회원 가입비는 별도로 적립· 관리하고 이자는 제9조제3항에 의거 사 용한다. ④ 특별회원의 명칭 및 가입비는 고성 군수가 정한다.			

고성군 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성군수 권한대행 이 향 래 인 부 군 수

2018년 4월 12일

고성군 조례 제2392호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 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회의원"을 "의회에서 추천받은 의회의원"으로, "기획감사실장"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법 제24조,제24조의2,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 2 및"을 "법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감사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례회에"를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한다.
-----	---	---	----	----	---	---------	------	----	-------	-----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u>공직</u> :	자윤리위원회(이하	제2조(구성) ①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	<u> </u>
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u>.</u>
1. 3명의 위원은 법	관,교육자, 학식과	1
덕망이 있는 사람 또	는는 시민단체(「비	
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제2조에 따른비	
영리민간단체를 말	한다)에서 추천한	<u>사람 중</u>
<u>자 중</u> 에서 위촉하여	야한다.	
2. 2명의 위원은 고	성군 <u>의회의원</u> 1명	2 의회에서 추천받은
과 고성군 <u>기획감사</u>	<u>실장</u> 1명으로 위촉	의회의원 소속 공무원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국	은 제1항제1호에 따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
라 위촉된 위원중에	서, 부위원장은 제1	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항제2호에 따라 위촉	노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	<u>다.</u>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에 따리	<u> 구성군의회 의원</u>	〈삭 제〉
을 위원으로 위촉하	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	아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 재적위원 과반수	②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고,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현 행	개 정 안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4조,제24조의2,제25조부터 제 8조까지, 제28조의 2 및 제29조에 해	
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고성군 기획감사실 감사	<u>② 간사는 감사담당주사로 한다.</u>
당주사로 하고, 사무직원은 고성군	공
직윤리담당자로 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삭 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	<u>ञ</u> ्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위	<u>원</u>
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u>파</u>
라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u> 큰</u> <u> -</u>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	년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군의회 2차 <u>정례회</u> 에 다음 각 호의	사 <u>정례회 개최 전까지</u>
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	of
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 〈삭 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	<u>정</u>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고
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	작
윤리위원회"는 "고성군 공직자윤리	위
원회"로 한다.	

고성군 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성군수 권한대행 이 향 래 인 부 군 수

2018년 4월 12일

고성군 조례 제2393호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7.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계층으로 한다.
 - ② 지원범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 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취약계층 주소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 및 읍·면장의 추천서를 검토하여 지원대 상자를 결정한다.
 -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생년월 성 :	일 별 남 □, 여 □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량 □ 장애인 □ 한부모가략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흥 □ 다문화가족 □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시설	고 소.	화기 🗆 E	·독경보형	형감지기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경	당 (직권	신청시):		읍면장 (인)
고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첨부서류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ગ	(서명 또는	트 인)

고성군 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성군수 권한대행 이 향 래 인 부 군 수

2018년 4월 12일

고성군 조례 제2394호

고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고성군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군립공원 관리

제2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고성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군립공원의 관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제3장 고성군 군립공원위원회

- 제4조(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군립공원의 지정 · 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 2. 공원계획의 결정 · 변경에 관한 사항
 - 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 1. 고성군 공무원
 - 2.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 ⑤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6조(임기) 제5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지명한다.
 - ②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 제1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시설사용료·점용료

제12조(입장료) 법 제37조에 따른 입장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 ③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④ 군수는 시설사용료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 4. 「장애인 복지법」의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6.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지원대상자
- 7.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 등으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자
- 9. 당해공원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 10.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1.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② 경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의거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제15조(요금게시) 군수 또는 시설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점용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 ② 점용료등은 연액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 은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 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하며 그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점용료의 징수시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17조(점용료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
- 제18조(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별표1]

공원의 명칭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상족암 군립공원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일대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일대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일대

■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별표2]

시설사용료 요금표(제13조 관련)

(단위: 원)

시 설	구 분		호 급	비고
	٥) .	륜 차	500	
	승	용 차	2,000	
주 차 장	승 합 차	15인승 이하	2,000	
	등 업 사	15인승 초과	3,000	
	화 물 차	1톤 미만	2,000	
		1톤 이상	3,000	
샤 워 장	일반인, 군인, 청소년		1,000	1회당
^F 77	어	린이	500	1회당
아 여 자	소 형	천 막	2,000	
야 영 장	대 형	천 막	4,000	

※ 차량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며,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톤 미만 총중량 3톤 미만, 최대적재량 1톤 이상 총중량 3톤 이상으로 구분한다.

※ 소형천막은 4인용 이하, 5인용 이상이면 대형천막을 말한다.

■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별지제1호서식]

주 차 권

주 차 권 원 부	주 차 권
일련번호	일련번호
원	원
()	()
년 월 일	년 월 일
고 성 군 수 ⑫	고 성 군 수인

80mm

비고: ()안에는 이륜차,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으로 표시할 것

고성군 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성군수 권한대행 이 향 래 인 부 군 수

2018년 4월 12일

고성군 조례 제2395호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고성군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등"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2."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 등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 업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인비행장 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 2. 무인비행장치 창업지원, 산업단지의 지정, 특화지구의 지정 등
 - 3. 무인비행장치의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 4. 그 밖에 군수가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5조(위·수탁관리)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3. 정부나 도·군이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5.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무인비행장치 등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 2.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8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관련 저변확대, 전문인력 양성, 연구, 사업위탁,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고시 제2018-49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8. 4. 5.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	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민원봉사과(☎055-670-277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 번	종 전 주 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고성읍 이당리 산156	고성읍 이당8길 186-26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1126	행정구역명(고성읍 이당리)을 이 용하는 여덟번째 도로	
2	하이면 봉현리 79	하이면 하이로 624-104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하이면)을 이용하여 하이로로 명명	
3	대가면 척정리 1468	대가면 척정2길 213-52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대가면척정리)을이용 하는 두번째 도로	
4	구만면 주평리 3	구만면 구만로 1122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구만면)을 이용하여 구만로로 명명	
5	삼산면 장치리 294-2	삼산면 장치3길 17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삼산면 장치리)을 이 용하는 세번째 도로	
6	삼산면 두포리 1085	삼산면 두포1길 198-15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삼산면두포리)을이용 하는 첫번째 도로	
7	마암면 화산리 724-2	마암면 화산3길 70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마암면 화산리)을 이 용하는 세번째 도로	
8	거류면 신용리 263-2	거류면 화당로 52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거류면 화당리)을 이 용하여 화당로로 명명	
9	하일면 송천리 산30-7	하일면 송천3길 38-29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하일면송천리)을이용 하는 세번째 도로	
10	하일면 송천리 산30-7	하일면 송천3길 38-31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하일면송천리)을이용 하는 세번째 도로	
11	하일면 춘암리 195	하일면 자란만로 1212-22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하이면~삼산면 해안에 걸쳐진 자란만(해안이름)의 이름을 활용 하여 부여	
12	상리면 오산리 280-3	상리면 상정대로 1450-60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고성군 상리면과 사천시 정동면 에서 연결되는 도로로 첫글자를 따서 상정대로라 명명	
13	영오면 오서리 1237-4	영오면 대가로 2155-23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대가면)을 이용하여 대가로로 명명	
14	영오면 오서리 1271-1	영오면 대가로 2155-110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대가면)을 이용하여 대가로로 명명	
15	마암면 도전리 884-1, 894-2, 895-3, 951-2	마암면 도전3길 257-57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1126	행정구역명(마암면도전리)을이용 하는 세번째 도로	
16	동해면 내산리 470-2	동해면 내산1길 128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동해면내산리)을이용 하는 첫번째 도로	
17	동해면 외산리 137-9	동해면 외산로 487-4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동해면 외산리)을 이 용하여 외산로로 명명	
18	거류면 은월리 1368	거류면 은월1길 130-130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거류면은월리)을이용 하는 첫번째 도로	
19	고성읍 신월리 533	고성읍 신월로 120-12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고성읍 신월리)을 이 용하여 신월로로 명명	
20	하이면 덕호리 1320-13	하이면 덕호1길 50-11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하이면 덕호리)을 이 용하는 첫번째 도로	
21	회화면 배둔리 317-14	회화면 배둔로 115-2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회화면 배둔리)을 이 용하여 배둔로로 명명	
22	회화면 삼덕리 1107-2	회화면 삼덕1길 17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회화면 삼덕리)을 이 용하는 첫번째 도로	
23	거류면 용산리 158-1	거류면 용산4길 36-7	2018.04.05.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거류면 용산리)을 이 용하는 네번째 도로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관할	도로명주소		폐지	페지사유	ם בו
전반	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고시일	에 시기대 	비고
1	거류면	화당로	48	2018. 04.05.	건물 멸실	
2	고성읍	송학고분로344번길	44	2018. 04.05.	건물 멸실	
3	고성읍	송학고분로344번길	27-5	2018. 04.05.	건물 멸실	

	>	도로명주4				
연번	관할 구역		T	폐지 고시일	페지사유	비고
	' '	도로명	건물번호	, –		
4	동해면	외산로	75-99	2018. 04.05.	건물 멸실	
5	동해면	구절로	362-212	2018. 04.05.	건물 멸실	
6	마암면	낙정길	18	2018. 04.05.	건물 멸실	
7	거류면	당동해안길	14-1	2018. 04.05.	당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건물 멸실	
8	거류면	당동해안길	14-8	2018. 04.05.	당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건물 멸실	
9	거류면	당동해안길	14-10	2018. 04.05.	당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건물 멸실	
10	거류면	당동해안길	22-1	2018. 04.05.	당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건물 멸실	
11	거류면	당동4길	30	2018. 04.05.	당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건물 멸실	
12	거류면	당동4길	32	2018. 04.05.	당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건물 멸실	
13	거류면	당동4길	34	2018. 04.05.	당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건물 멸실	
14	거류면	당동4길	36	2018. 04.05.	당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건물 멸실	
15	거류면	당동5길	38	2018. 04.05.	당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건물 멸실	
16	거류면	당동5길	38-1	2018. 04.05.	당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건물 멸실	
17	거류면	당동5길	40	2018. 04.05.	당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건물 멸실	
18	거류면	당동5길	44	2018. 04.05.	당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건물 멸실	

고성군 고시 제2018 - 50호

고성군관리계획(남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고성군관리계획(남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고성군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4. 9. 고 성 군 수

- 1. 고성군관리계획(남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아래 참조
- 2. 관계도면 : 실음 생략

고성군관리계획(남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군관리계획(남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가.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변경)

	구 분		부지면	적(m²)	건축	건물면 면적	적(㎡) 연무	· · · · · · · · · · · · · · · · · · ·	구성비	ग(%)	비
세부	시설명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고
총	계	변경	855,000	805,324	5,242	5,846	5,242	6,586	100.0	100.0	
시	설소계	변경	105,397	173,569	_	-	-	-	12.3	21.6	
도로	및 광장	변경	18,508	32,470	_	-	-	-	2.2	4.0	
조	경시설	기정	1,742	1,742	_	-	-	_	0.2	0.2	
휴	양시설	변경	6,546	38,286	_	204	-	204	0.7	4.8	
유	희시설	변경	-	2,050	_	-	-	-	-	0.3	
운	동시설	기정	1,757	2,637	_	_	-	-	0.2	0.3	
교	양시설	기정	72,708	89,804	5,100	5,100	5,100	5,100	8.5	11.1	
편	익시설	기정	4,052	6,496	82	482	82	1,282	0.4	0.8	
공원	관리시설	변경	84	84	60	60	60	60	0.1	0.1	
녹	지	변경	749,603	631,755	_	_	_	_	87.7	78.4	

※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공원면적 변경 기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7-27호(2017. 2. 2.)].

나. 공원세부시설별 결정(변경)조서

1) 공원세부시설 결정(변경)

					비기대	정 (;;;²)					
구분		시설명		위치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변경		합계		855,000	805,324	5,242	5,846	5,242	6,586	
도로	변경		소계		18,508	32,470	1	-	-	ı	
및	변경		도로	전지역	17,913	31,875	ı	-	ı	ı	
광장	기정	1-1 만남의광장		수남리 255번지	595	595	Ī		ı	-	

						N -1-1	-1 (a)		건물면	적(㎡)		
구분		시	설명	위치		부지면	적(m³)	건축	면적	연덕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소계			1,742	1,742	-	-	-	-	
조경 시설	기정	2-1	끝섬정원	신월리 산10-7번지	일원	460	460	-	-	-	-	
1.15	기정	2-2	연못정원	동외리 595번지	일원	1,282	1,282	-	_	-	_	
	변경		소계			6,546	38,286	-	204	-	204	
	기정	3-1	남산마당	신월리 820번지	일원	2,781	2,781	-	-	-	-	
	기정	3-2	문학마당쉼터	수남리 272번지	일원	316	316	-	-	-	-	
	기정	3-3	작은쉼터-1	동외리 631번지		93	93	-	-	-	-	
	기정	3-4	작은쉼터-2	수남리 282번지		70	70	-	-	-	-	
	기정	3-5	작은쉼터-3	수남리 282번지		444	444	-	-	-	-	
휴양	기정	3-6	작은쉼터-4	수남리 255번지		67	67	-	-	-	_	
시설	기정	3-7	작은쉼터-5	수남리 271번지		102	102	-	_	-	_	
	기정	3-8	충혼쉼터-1	동외리 369-1번지	일원	1,329	1,329	-	-		-	
	기정	3-9	충혼쉼터-2	수남리 274번지		1,344	1,344	-	-	-	-	
	신설	3-10	피크닉장	수남리 138번지	일원	-	30,000	-	204	-	204	
	신설	3-11	전망쉼터-1	수남리 265번지	일원	-	950	-	-	-	-	
	신설	3-12	전망쉼터-2	신월리 산60-1번지	일원	-	390	-	_	-	_	
	신설	3-13	작은쉼터-6	신월리 690-2번지	일원	-	400	-	-	-	-	
	변경		소계			-	2,050	-	-	-	-	
유희 시설	신설	9-1	숲속놀이터	동외리 648번지	일원	-	1,750	-	_	-	_	
' -	신설	9-2	공룡놀이터	신월리 820번지	일원	-	300	-	-	-	-	
	변경		소계			1,757	2,637	-	-	-	-	
운동 시설	기정	4-1	체력단련장	수남리 255번지		1,757	1,757	-	-	-	-	
' =	신설	4-2	숲속운동시설	신월리 711-1번지	일원	-	880	-	-	-	-	
	변경		소계			72,708	89,804	5,100	5,100	5,100	5,100	
	기정	5-1	어린이드림피아	동외리 625-11번지	일원	19,373	19,373	5,100	5,100	5,100	5,100	
	기정	5-2	충혼탑	동외리 368번지	일원	639	639	-	-	-	-	
	기정	5-4	충혼기념비	수남리 274번지		487	487	-	-	-	-	
교양	기정	5-5	터널정원	수남리 282번지		10,520	10,520	-	-	-	-	
시설	기정	5-6	사계절식물원	수남리 282번지	일원	4,226	4,226	-	-		-	
	기정	5-7	교과서식물원	수남리 282번지	일원	8,011	8,011	_	_	_	_	
	기정	5-8	꽃향기식물원	수남리 300번지	일원	9,077	9,077	-	-	-	_	
	기정	5-9	동물생태학습장	수남리 373번지	일원	1,533	1,533	-	_	-	-	
	기정	5-10	억새원	수남리 300번지	일원	18,238	18,238	-	_	-	_	

					ㅂ기머	정 (~~²)		건물면	적(㎡)		
구분		시	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교양	신설	5-11	숲체험장	수남리 112번지 일원	-	16,500	-	-	-	-	
시설	신설	5-12	숲명상장	신월리 809번지 일원	-	1,200	_	-	-	_	
	변경		소계		4,052	6,496	82	482	82	1,282	
	기정	6-1	주차장-1	동외리 595번지 일원	2,651	2,651	-	-	-	_	
-1 41	변경	6-2	주차장-2	동외리 354-2번지 일원	358	962	-	-	-	-	
편익 시설	기정	6-3	화장실-1	동외리 595번지 일원	73	73	46	46	46	46	
	기정	6-4	화장실-2	수남리 298번지 일원	130	130	36	36	36	36	
	기정	6-5	남산전망대	신월리 820번지 일원	840	840	-	ı	_	_	
	신설	6-6	전망대	수남리 367번지 일원	-	1,840	_	400	-	1,200	
공원			소계		84	84	60	60	60	60	
관리 시설	기정	7-1	공원관리사무소	동외리 595번지 일원	84	84	60	60	60	60	
녹지	변경		소계		749,603	631,755	-	-	_	-	
및 기타	변경	8	녹지	전지역	749,603	631,755	-	_	_	_	

2) 도로시설 세부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비고
기정	계	13개	노선			4,601	17,913			
변경	계	22개	노선			7,741	31,875			
신설	대로	3	1	25	연결로	334	8,350	남측경계	남측경계	
기정	소로	1	1	12	연결로	115	1,354	동측경계	주차장-1	
기정	소로	2	1	10	연결로	166	1,672	동북측경계	소로1-1	
기정	소로	3	1	4	연결로	1,592	6,383	만남의광장	끝섬정원	
기정	소로	3	2	4	연결로	581	2,405	북측경계	소로3-1	
기정	소로	3	3	4	연결로	68	282	충혼쉼터-1	만남의광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4	3	탐방로	530	1,625	소로3-1	소로3-1	
기정	소로	3	5	3	탐방로	155	519	소로3-1	사계절식물원	
기정	소로	3	6	3	탐방로	63	189	사계절식물원	사계절식물원	
기정	소로	3	7	3	탐방로	40	122	사계절식물원	소로3-1	
기정	소로	3	8	3	탐방로	88	270	소로3-9	사계절식물원	
기정	소로	3	9	3	연결로	358	1,079	소로3-4	소로3-1	
기정	소로	3	10	2	연결로	30	60	소로3-2	충혼쉼터-1	
기정	소로	3	11	2	탐방로	815	1,953	소로3-2	소로3-9	
신설	소로	3	12	2	탐방로	66	132	소로3-13	소로3-2	
신설	소로	3	13	2	탐방로	224	448	북측경계	소로3-11	
신설	소로	3	14	2	탐방로	302	604	서측경계	작은쉼터-3	
신설	소로	3	15	2	탐방로	652	1,304	소로3-1	전망쉼터-2	
신설	소로	3	16	2	탐방로	380	760	남산전망대	소로3-15	
신설	소로	3	17	2	탐방로	820	1,640	전망쉼터-2	연못정원	
신설	소로	3	18	2	탐방로	268	536	동측경계	소로3-9	
신설	소로	3	19	2	탐방로	94	188	주차장-2	어린이드림피아	

고성군 공고 제2018 - 421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2018년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고성군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등 조례안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2018. 3. 29.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정비, 기존 도로를 활용한 개발 기준 정비, 축사 등 특정 건축물 및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설치제한 기준 신설, 용도지구 명칭 조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안 제20조)
 - 1) 태양광발전시설의 입목축적 기준 변경(150% 이하 → 100% 이하)
 - 2) 경사도 및 임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기준 적용
- 나. 기존 도로를 활용한 개발 기준 신설(안 제21조)
- 다. 축사 등 특정 건축물 및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제한 기준 신설 (안 제21조의2)
 - 1) 축사: 주요 도로(지방도 이상)에서 100m 이내 입지 제한 (기 입법예고한 내용 중 축사간의 거리제한 내용 삭제)

- 2) 가축분뇨재활용시설 및 악취방지법에 따른 시설: 10호 이상의 주택 밀 집지역과 도로(면도 이상)에서 500m 이내 입지 제한
- 3) 태양광발전시설: 고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상의 내용을 일부 정비 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제한 기준 신설
- 라.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제한 예외규정 신설 (안 제21조의3)
- 마.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35조, 안 제37조, 안 제38조, 안 제40조, 안 제42조부터 제49조)
- 3. 입법예고 기간: 2018. 3. 29. ~ 2018. 4. 18.(20일간)
- 4. 개정 조례안: 붙임
-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간: 2018. 3. 29. ~ 2018. 4. 18.(20일간)
 -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e메일(monev0guv@korea.kr)
 - 다. 기재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의견접수 : 경상남도 고성군(도시개발과)
 - 1)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 도시개발과
 - 2) 전화: 055-670-2563, 팩스(FAX): 055-670-2559

6. 참고사핫

- 가. 이 조례 개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 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입법예고명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기선 세월자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8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귀하

조례 제 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 제20조제1항제1호 중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150퍼센트(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일 것
-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 제2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동일한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2호 이상의 주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기존 부지의 호수 또는 면적을 포함하여 단독주택 30호를 초과하거나 개발면적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발할 수 없다. 다만, 기존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제한)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 (3)에 따른 특정 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축사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의한 배출시설을 말한다)은 주요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말한다)에서 10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의 가축분뇨

재활용시설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가목과 구목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과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중면도 이상)에서 50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 3.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
 - 가.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에서 1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나.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9호 이하는 100미터 이내).
 - 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하나의 필지에 둘 이 상을 나누어 허가를 할 수 없다.
 - 마.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다만, 발전시설간은 제외한다)에 3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높이 2미터 이상의 울타리(휀스 또는 수목)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있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3(설치제한의 예외규정) 건축물의 사용승인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제21조제1항제3호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 1. 위치: 옥상 난간(벽) 내측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후

퇴하여 설치하는 것

- 2. 높이: 태양광 기둥 구조물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미터 이내인 것
- 3. 안전: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 제출(발전용량이 1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한 것
- 제35조의 제목 "(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을 "(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3호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42조 본문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부터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혀 해	개 정 안
	, , ,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	
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u>〈단</u> 서 신설〉	<u>다만,</u> 다음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군
<u>이 '현'현/</u>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1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150퍼센트(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100
	퍼센트) 이하인 경우
2.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미	
만일 것.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	<u>만일 것.</u>
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	
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최고표고와 최	
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	
산한다. 다만, 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	
가 20도 이상인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기준 지반고(개발행위 대상 토지에	3
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로법상의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의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	
만에 위치하는 토지. <u>다만, 앞의 내용을</u>	(단서 삭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	
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4. 해안도로에서 해안 사이에 위치하는	4

했 개 악 혂 정 토지가 아닌 경우. 다만, 해안의 경관보 -----. 〈단서 삭제〉 호 및 환경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개발행위 내용에 포함된 경우 군계획위 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5.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의 산정방법 은「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생략) 건축물의 건축)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동일한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2호 이 상의 주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기존 부 지의 호수 또는 면적을 포함하여 단독 주택 30호를 초과하거나 개발면적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발할 수 없다. 다만, 기존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21조의2(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제한)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 (3)에 따른 특정 건축물과 공작물에 대 한 이격거리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2조제3호에 의한 배출 시설을 말한다)은 주요도로(「도로 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 도를 말한다)에서 100미터 이상을 이격 하여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혀 해	7개 저 아
현. 행	개 정 안 법률」제27조 및 제28조의 가축분뇨재 활용시설과「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 표 2 제2호(가목과 구목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 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과 도로(「도로 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에서 50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3.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주에 전화하여야 하다 나마 「저기사
	가.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 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
	지하지 아니할 것. 나.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9호 이
	하는 100미터 이내). 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 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현	행	개 정 안
	8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판한 법률」상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허가를 할 수 없다. 마.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다만, 발전시설간은 제외한다)에 3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높이 2미터 이상의 울타리(휀스 또는 수목)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전이나 사업 특성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의3(설치제한의 예외규정) 건축물의 사용승인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제21조제1항제3호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경우에는 거리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1. 위치: 옥상 난간(벽) 내측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후퇴하여 설치하는 것2. 높이: 태양광 기둥 구조물의 높이가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미터이내인 것3. 안전: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등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 제출(발전용량이 10kw를 초과

현 행	개 정 안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미
	터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
	설비 기능을 확보한 것
제35조(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제35조(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u>.</u>
<u>수 없다.</u>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제37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u>〈삭 제〉</u>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u>수 없다.</u>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u>공동주택</u>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을 제	
<u>외한다)</u>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u>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u>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u>골프연습장</u>	
<u>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u>	
<u>숙박시설</u>	
<u>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u>	

현 행		개	정	안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u>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u> 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u>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u>				
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				
독물보관·저장시설 에 한한다)				
<u>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u>				
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				
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u>〈삭 제</u>	\geq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				
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u>할 수 없다.</u>				
<u>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u>				
<u>공동주택 중 아파트</u>				

현 행	개	정	안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			
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			
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u>공장</u>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u>창고시설</u>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현 행	개 정 안
·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제40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 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에서 건축하	제40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는 건축물의 높이 또는 층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u>수변경관지구</u> : 5층 또는 20미터 이	
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 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 하로 한다) 4. 삭 제	
5. 전통경관지구 및 조망권경관지구 : 12미터 이하 제42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u>〈삭 제〉</u> 제42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및 <u>수변경관지구에서</u>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	<u>특화경관지구</u>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대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	
집당에 따라 소청 등의 소시를 하시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삭 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			
는 골프연습장			
2. 삭제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			
<u>습장</u>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u> 공장</u>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u>창고시설</u>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			
<u>외한다)</u>			
8. 「건축법 시행령 <u>」</u>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u>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u>			
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u>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u>			
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u>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u>			
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제73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제1호·제 2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미관도로 (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명」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부분에는 개방갑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	현 행	7	H	정	안
2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미판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판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② 영 제73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되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제				
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정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u> 2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u>				
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전축선 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 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 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미관도				
○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 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 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				
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되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 계				
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부분에는 개방감확보, 출입의용이 및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명」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				
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 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 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 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 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 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 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 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 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 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 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 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 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 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 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 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 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 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 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 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 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 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 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 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 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 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 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 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u>〈삭 제〉</u>			
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 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				
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				
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	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				
·계단·부설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	·계단·부설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				

현 행		개	정	안	
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u>2. 조경식수</u>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u>〈삭 제〉</u>	-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1. 중심지미관지구 : 3층 이상</u>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					
제46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 형태제한	<u>〈삭 제〉</u>	-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미					
관지구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					
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					
을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제한할					
<u>수 있다.</u>					
제47조(미관지구에서의 부속건축물 제	<u>〈삭 제〉</u>	-			
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					
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					
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					
<u>치할 수 없다.</u>					
② 미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					

현	행			개	정	안
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	에서의 건축제	<u>〈삭</u>	제>			
한) 영 제77조제1항에 미	<u> 라라 학교시설보</u>					
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					
<u> 란주점</u>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원	<u>-</u> 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정신병원 · 요					
<u>양소</u>						
4. 「건축법 시행령」	<u>별표1 제15호의</u>					
<u>숙박시설</u>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u>위락시설</u>						
6. 「건축법 시행령」	<u>별표1 제17호의</u>					
<u> 공장</u>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u>창고시설</u>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설(주유소를 제					
<u>외한다)</u>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	세차장 및 주차					
<u>장을 제외한다)</u>						
<u>10. 「건축법 시행령」</u>	별표1 제21호의					

현 행	개	정	안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시			
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u>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u>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u>묘지관련시설</u>			
<u>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u>			
<u>장례식장</u>			
	<u>〈삭 제〉</u>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			
축 <u>할 수 없다.</u>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u>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u>			
<u>공동주택</u>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			
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			
한다) 4 [기초비 기체과 번교1 제0구시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			
외한다) 및 제11호의 노유자시설(아동			

현 행	개	정	안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u>창고시설</u>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			
<u>외한다)</u>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			
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u>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u>			
· 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하			
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u>가. 교도소</u>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			
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			
는 시설			
<u>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u>			
묘지관련시설			
<u> </u>			

고성군 공고 제2018 - 472호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4. 고 성 군 수

- 1. 자치법규명: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 '고성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상 위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례 조문 정비(안 제1조)
 - 목적조항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
 - 나. 상위 법(「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조문 삭제(안 제2조)
 - 다. 자율정비 지적사항(법 체계) 정비(안 제8조)
 - 상위 규정인 조례에서 하위 규정인 예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 정비
-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4월 24

고 성 군 공 보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처: 고성군 행정과 후생단체담당
 - O 주소:(우)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O 전화: 055-670-2113, FAX 055-670-2109
-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행정과 후생단체담당(전화: 055-670-2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조례 제 호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제5조"로,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 제3조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고성군수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제4항 중 "부의장은"을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한 사람으로 한다"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u>(이하"법"이라 한다)</u> 제5조 및 제9조	제5조
에 따라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협의회"라 한다) 및 고성군통합방위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u>〈삭 제〉</u>
<u>사항을 심의한다.</u>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u>〈신 설〉</u>	제3조(구성) ① 고성군수는 「통합방위
	법」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u>"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
① (생 략)	<u>②</u>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u>〈삭 제〉</u>
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u>부의장</u> 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④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u>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u>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⑤ <u>해당하는</u>
사람으로 한다.	사람으로 구성한다.

고성군 공고 제2018 - 477호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8. 4. 9. 고 성 군 수

- 1. 조례명: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2. 개정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순화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목적(안 제1조)
 -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안 제2조)
 -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안 제3조)
 -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회의(안 제4조)
 - 의견의 청취(안 제5조)
 - 간사와 서기(안 제6조)
 - 시행규칙(안 제7조)
 - 불필요한 규정 삭제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과제 권고사항 반영

- 상위 법령 폐지, 위원회 신설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29일까지 고성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처: 고성군청(기획감사실)
 - 주소: (우)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전화: 055) 670-2054, FAX) 670-2059
-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기획감사실 기획담당(055-670-20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정조	조정위원.	회 조례
----------	-------	-------	------

○ 성명 (단체명):

O 주 소:

O 연 락 처:

, n o	찬성	여부	ما ما	บ
내용	찬성	의 견 난성 반대	의 견	비고

조례 제 호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직제순서가 앞서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전 실·과·사업소장,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 ④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 2. 정부 및 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4. 다른 조례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정책과 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⑤ 제4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심의,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 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다.
 -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 ①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중 "고성 군정조정위원회"를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 ②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 중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로, "고성군정조정위원회"를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 ③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중 "고성군정조정위원 회"를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 ④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 제1항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 ⑤ 「고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3조 중 "군정조정위원회" 를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 ⑥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중 "고성군정조정위원회" 를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